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1차)			
개최일시	2019. 1. 7(월) 14:00~17:00	회의장소	대학원별관 204호
참 석 자 (12명)	강미리(동아리연합회 회장), 김다연(대학원 학생회장), 김상택(기획처장), 김선우(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 도재형(총무처장), 이공주복(교무처장), 이민하(학부 총학생회장), 이상은(삼일회계법인), 이준엽(관리처장), 최성희(학생처장), 최혜련(예산팀장), 한은서(학부 부총학생회장)		
불 참 자 (1명)	이지호(자연과학대학 공동대표)		
안 건	2018학년도 교비 및 병원회계 추경예산(안) 심의 및 의결		
내 용	■ 개회 관리처장의 제안으로 각 위원들이 돌아가며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다. 총학생회장이 자연과학대학 공동대표는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알리다. 관리처장이 제 1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라 함)를 개최하고 위원장을 호선할 것을 제안하다. ■ 회의내용 1. 위원장 선출 - 관리처장이 추천을 제안하고 총무처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책임자로 교무처장을 추천하다. 관리처장이 제청하고 위원 전원 찬성으로 교무처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다. 2. 논의사항 가. 학부 학생위원 요구안 검토 - 위원장이 학교 측과 학생 측이 번갈아 가며 회의록 초안을 작성하고 있음을 말하며 위원들에게 1차 회의의 회의록 초안 작성을 누가할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1차 회의는 학교 측에서 먼저 작성하는 것을 제안하고 위원 모두가 동의하다. - 위원장이 안전인 추경예산(안) 심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하다. - 총학생회장이 전년 회의 때 등심위 구조에 대해서 논의했던 것을 말하며 위원 전체에 요구안을 배부하다. 총학생회장은 전년도 합의사항으로 학생과 학교가 번갈아가며 회의록 초안을 작성하고 회의 2시간 전에 회의자료 열람		

을 가능하도록 한 것을 말하며 올해에도 계속해서 합의사항을 이행하기를 당부하다.

- 위원장이 안건으로 올라온 추경예산(안) 심의를 먼저하고 추가적으로 등심위 구조에 대한 사안을 논의하는 것을 제안하다.

- 총학생회장이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등심위 구조에 대한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하며, 지난 회의에도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 못한 사안들이 있어 초반에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제안하다.

- 위원장이 작년 등심위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한 사안이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의결도 하지 못한 사안들이라고 말하다.

- 관리처장이 요구안을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에는 금일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이 있어 어렵겠지만, 요구안을 모두발언이라고 생각하고 각 항목을 어떠한 의미로 제안했는지 들은 후에 본 안건을 심의하는 것을 제안하다.

- 총학생회장이 요구안을 설명만 하고 추경예산(안) 심의로 넘어가는 것이냐고 질의하다.

- 관리처장은 추경예산(안)도 설명할 부분이 많아, 어떤 사안들이 있는지 들어보고 이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다. 학생위원들의 요구안과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듣고 그 이후 심의하는 것을 제안한 것이라고 말하다.

- 총학생회장이 그간 회의록에 초반엔 위원장을 선출한 후 학생 측 외부전문가선임, 참관인 허용 등 등심위 운영관련사항을 논의했다고 적혀있는데 이번엔 왜 안건으로 바로 넘어가려하는 것인지 질의하다.

- 부총학생회장이 운영사항을 초반에 논의하고 싶은 이유는 이 회의체 자체가 비민주적이어서 구조를 납득할 수 없어 회의 안건을 먼저 논의하는 것보다 개선되었으면 하는 것을 먼저 논의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다.

- 관리처장이 모두발언 형식으로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총학생회장이 요구안을 설명하다. 첫 번째로 학생 수업권을 침해하는 강사구조조정 관련 사안을 말하며, 다른 학교에서는 강사를 해고한다거나 수업을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데 본교는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고 하다. 이에 관련해서 인건비 지출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과 강사들의

안정적 임용에 대한 예산 확보를 요청하다. 두 번째로 법인 책무성 강화와 학생 부담 완화에 대해 말하며, 현재는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사학연금만 학교법인이 부담하고 있는데 이외에 법인이 고용주로서 교직원들을 고용할 때 생기는 비용들도 마땅히 부담해야 한다고 말하다. 세 번째로 차등등록금과 입학금이 구체적 근거가 없었음을 지적하며 차등등록금 개선과 입학금 즉각 폐지를 요구하다. 네 번째로 등심위 구조개선으로 학생 측 외부위원을 선임하는 것, 개회조건을 2/3이상 참석으로 변경하는 것, 학생위원 3명 이상 요구 시 회의 개최하는 것, 자료를 1주일 전에 제공하는 것과, 참관인 허용문제를 요구한다고 설명하다.

- 총무처장은 시간강사법 시행으로 인해 등록금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인상가능성이 있는지 질의하다.

- 총학생회장이 시간강사법 시행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왜 학생이 지어야 하는지 유감을 표하다.

- 총무처장은 수년간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이고 언론에서 정부의 지원책도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학생위원이 충분한 예산 확보를 요청한다고 해서 질의한 것이라고 답하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가 시간강사료가 예산의 2%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는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한다면 학생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하다. 또한 교원보수는 법인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이다.

- 총학생회장이 등록금뿐만이 아니라 납부한 등록금에 비해서 환경이 열악하고, 학생지원이 제대로 안 되는 것도 이미 학생이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다.

- 동아리연합회장이 강사법의 경우 학생들의 불안과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고 말하며 강사법에 따라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거나 특정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하다. 또한 법인 책무성도 우리학교는 60%대로 낮은 편이며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하다. 이미 수입에 있어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학생 부담이 큰 상황이고 이를 완화시켜주기 위해 학교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다. 차등등록금의 경우에는 차등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 밝혀졌으니 이를 개선하여야 하며, 많은 대학에서 입학금 즉각 폐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학교도 이를 따라야 한다고 말하다. 또한 등심위의 비민주적인 구조 관련해서 처음부터 논의하고자 한 이유는 학생위원들이 비민주적인 등심위에 계속해서 참여 하겠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하다. 특히 외부전문가 선임을 중점적으로 다뤘으면 하는 것은 자료를 받아서 분석하고 공부해도 교직원 위원보다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 쪽 전

문가가 필요하며 등록금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야한다고 말한다. 또한 등심위는 등록금을 심의하는 곳인데 학생위원이 1명도 참석하지 않아도 의결이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며 위원회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인다.

- 총무처장은 다른 학교 등심위 회의록을 찾아보았는데 우리학교처럼 하는 곳이 없다며 위원들에게 다른 학교 회의록을 참고하는 것을 제안한다. 우리학교는 예산 관련한 사안보다 계속 구조 관련한 사안만 논의하고 있는데, 다른 학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며 예산 관련된 학생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요청한다.

- 동아리연합회장은 어느 학교 회의록을 보신거냐고 질의하다.

- 총무처장은 인하대나 아주대 등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회의록을 본 것이라고 답하다.

- 동아리연합회장은 그 학교들의 등심위 구조는 어떤지 질의하며 본인도 다른 학교 회의록을 참고하였다고 말하며 협의가 잘 되었던 경우는 보통 구조가 민주적인 등심위라고 답하다.

- 총무처장이 어느 학교를 참고하였는지 질의하다.

- 총학생회장이 서울대의 경우 학생위원 3명, 교직원위원 3명, 외부 전문가위원 3명(학생, 학교, 학생/학교 협의추천위원 각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립대에서는 고려대학교가 학생위원이 전문가를 추천하면 그를 바탕으로 총장이 추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다.

- 총무처장이 등심위 구조문제를 소홀히 다루자는 것이 아니라 심의 위원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경우가 적어 아쉽다고 하다. 학생위원들이 예산(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 총학생회장이 작년에도 예산 관련한 세부요구안을 갖고 왔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구조에 대한 요구안을 갖고 왔다고 해서 예산 관련한 논의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다. 구조에 대한 논의를 마친 후 예산에 대한 논의도 하고자 한다고 말한다.

- 관리처장이 학부 학생위원들의 요구안이 크게 예산에 대한 논의가 수반되는 장기계획과 등심위 운영에 대한 것으로 나뉘는 것 같다고 말하며, 오늘의 안건인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먼저 이야기 해보고 후자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한다. 비민주적인 구조라는 말만으로는 추상적인 논의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회의를 해보고 구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다음 회의 때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어떨지 제안하다.

- 총학생회장이 차기 회의 때 등심위 운영 및 구조에 관한 사안으로 회의를 하겠다는 약속을 해줘야 다음 안건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임을 말하며, 다른 학교의 경우 따로 실무회의를 잡아 논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하다.

- 동아리연합회장은 노력하겠다는 말은 모호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회의일정을 잡았으면 한다고 말하다. 비민주적이라는 말이 추상적이라면 얼마나 구체적이어야 하는지 질의하다.

- 관리처장은 민주적/비민주적이라는 말은 포괄적인 것이니 이것만 가지고 논의하다보면 끝이 없을 것 같아 이번 회의를 통해 학생위원들이 느끼는 구체적인 상황이나 제안점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하다. 학생위원의 모두발언은 공감하고 이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상정 안건을 먼저 논의하는 것을 제안하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는 역대 등심위가 학생위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하다. 이것을 첫 회의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차기 회의 때에도 기존 안건들 때문에 구조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미뤄질 우려 때문이라고 하다. 오늘 합의를 다 하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다음 안건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다.

- 위원장이 등심위 구조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온 것이기에 그동안 학생위원들이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은 이유도 있었을 것이라고 하다. 만약 여기서 의결하게 되면 비민주적이라고 학생위원들이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다. 그것 보다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마련하여 별도로 논의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하다. 등심위에서는 추경예산(안)과 내년 예산(안), 등록금책정까지 스케줄이 촉박한 상황임을 말하며 작년에 논의했던 내용이 반복될 것임을 말하다.

- 부총학생회장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인지 질의하다.

- 위원장이 지금 당장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구성을 고민해보아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말하다.

- 총학생회장이 실무위원회를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요청하다. 지속적으로 구조개선에 대해 요구를 하는 것은 비민주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함이고 그동안 해결은커녕 논의도 안 이루어졌다고 하다. 등심위 회의 중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다.

	- 관리처장이 제안된 안건을 먼저 논의하고 운영관련 사항을 논의하자고 제안하며,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사안도 의결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말한다. 일단 오늘 상정된 안건을 논의하고 추후 필요하면 다음 회의 때 안건으로 올려 의결하는 것을 제안하다. - 총학생회장이 만약 오늘 시간이 안 되면 차기 회의 때 논의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묻다. - 관리처장이 안건으로 상정하면 다음회의 때 논의해 보자는 것이라고 답하다. 반복적인 것들을 다음회의 때 충분히 논의해보자고 하며, 기획처장에게 안건 상정여부를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요청하는 경우 가능하다고 답하다. - 학생처장은 등심위 구조에 대한 학생위원들이 요구 사항들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 논의된 것으로 작년에도 1차 회의 대부분과 2차 회의 초반에 장시간 논의하였다고 말한다. 등심위 구성에 있어 숫자상으로 학생위원과 교직원위원이 동수로 구성되어 비민주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외부위원 1인의 경우 학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회계전문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서 벗어난 발언이나 의사 결정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 총학생회장은 논의가 말 그대로 안 된 게 아니라 제대로 안되었다고 말한 것이라고 지적하다. 지난 수년간 논의 되었던 건데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가져온 것이라고 말한다. - 학생처장이 사전에 정해진 결론이나 입장을 고수하기보다는 등심위를 통해 치열하게 협의하고 합의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적인 절차라고 말한다. 참관인 관련해서는 2014년도 등심위에서 참관인을 허용하는 대신 학생측과 학교측이 회의록을 번갈아 가며 자세하게 작성하는 것으로 합의했던 사항이라고 말한다. - 위원장이 학교에서 시급한 사안들을 먼저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위원들이 동의를 한다면 오늘 상정된 추경예산(안)심의를 제안하다. - 기획처장이 등심위에서 추경예산(안)이 의결이 되어야 이사회에 가는데 이사회가 1월 16일로 정해져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러한 논의를 지금 계속하면 정해진 기한을 맞추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한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가 학생위원들이 예산에 관심이 없어서 구조 얘기를 꺼낸 게 아니라고 말하며, 학생위원들도 외부위원이 학교를 위해 일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최소한 학교와 학생이 함께 추천과정에 참여해
--	---

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2014년 합의사항인 양쪽 서기가 서기록을 작성하는 것이 참관인 논의를 앞으로 못하는 조건으로 된 것이 아님을 지적한다.

- 예산팀장이 위원으로서의 대표성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한 것이므로 참관인 허용보다는 양쪽 서기가 서기록을 작성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말한다.

- 위원장은 다시 논의할 수 있는 문제지만 논의하기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기 때문에 급한 안건을 먼저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강사법에 대해서는 강사법 자체가 강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3월 초에 시행령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 학교가 당연히 준수할 것이라고 말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교육의 질을 하락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지 않을 것이나 공교롭게 지금이 교과과정 개편시기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소문들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인다. 강사관련 예산에 대해선 내년 예산(안)에서 설명이 있을 테니 안건으로 넘어가는 것을 제안한다.

- 동아리연합회장은 강사법 관련해서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걸 학교전 구성원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한다.

- 위원장은 시행령이 나와야 세부 사안들이 결정이 되고, 시행령이 나오면 학교는 당연히 따를 것이라고 말한다. 내년 예산은 미리 편성해야 하므로 현재 기준 그대로 예산을 잡아 시행령보다 많이 잡아 놓은 것일 거라고 말한다.

- 동아리연합회장은 타 학교의 사례를 말하며 유연비어가 많은 상황이라고 말한다.

- 위원장은 학생들이 강사 수업이 많아서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불만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강사가 많은 수업을 한다고 해서 교육의 질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기본적인 방향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인다.

- 총학생회장은 교육의 질이 저하된다는 우려는 강사 수가 줄어서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가 늘어나거나, 대형 강의의 규모가 더욱 커지거나, 사이버 강의가 늘어나는 것 등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교무처의 기초가 그런 것이라면 그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 관리처장이 강사법 얘기는 2019학년도 예산(안) 논의할 때 다시 얘기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한다.

	- 위원장이 2019학년도 예산(안)에 예산관련 사항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듣고, 교과과정은 등심위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며 강사 수요는 단과대학에서 정해지는 것이라고 덧붙인다. - 총학생회장이 학생들도 알고 있고 대외비로 교무처에서 학과로 문서를 보내서 따르라고 한 다른 학교의 사례를 보았다고 말한다. - 부총학생회장은 다른 학교에서는 대학 본부에서 단과대학에 강사를 임용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학교가 그럴 거라는 것은 아니지만 불안해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공개적으로 학교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한다. - 총무처장이 교무처가 현재 교과과정 개편 주기와 겹쳐서 교과과정에 따라 강사 개인의 임용여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기에 강사 구조조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곤란한 것 같다고 한다. 다른 학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졸업학점을 줄인다거나 하는 것은 우리학교에서 생각 해 본적도 없으며, 교무처의 기초는 교육부에서 세부 지침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 아직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자세히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한다. - 위원장이 시행령 자체가 강사들에게 불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학교는 시행령에 따라서 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학교가 교육의 질을 하락시키는 우를 범하진 않을 것이며, 강사 제청을 각 단대에서 하면 3월에 발표되는 시행령에 맞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나. 본회의 안건 1) 2018학년도 교비 추경예산(안) 심의 및 의결 - 위원장이 오늘은 의료원에서도 기다리고 있어 추경예산(안) 심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하며 예산팀장에게 추경예산(안) 설명을 요청하다. - 예산팀장이 2018학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 각 수입, 지출 항목에 대해 당초예산대비 증감요인을 덧붙이며 설명하다. - 위원장이 2018학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문이 있는 지 위원들에게 질의하다. - 부총학생회장이 사전 제공 자료에 집행률이 있었으나 연구비, 학생 경비, 실험실습비와 같은 세부적인 내용이 빠져있다고 말한다. 사전 제공 자료에는 기타학생경비라든지, 교내 및 교외장학금, 연구학생경비 이런 것이 있었는데 회의 자료에서는 집행을 확인이 안 된다고 말한다. 작년 회의록을 보면 학생 지원비 쪽의 집행률이 낮아 학생위원이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이번 회의 자료에
--	--

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말한다.

- 예산팀장이 다음 회의 때는 집행률을 추가하겠다고 답하고, 지난번 회의 때 학생위원들이 지적한 낮은 집행률은 사업에 따라 집행시기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다. 작년에도 등심위에서 위와 같은 우려가 있어 예산팀에서 예산집행 독려를 위해 전교에 시행문을 발송하였으며, 실제로 결산 시 등록금회계 이월이 거의 없었음을 언급하다.

- 총학생회장이 지금 회의 자료가 더 자세한데 이걸 외부에 가지고 나가도 되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회의 자료이므로 회의 시에만 사용을 요청하다.

- 총무처장이 다음 회의 때 예산(안) 심의할 때도 이번 회의 자료가 필요한 것인지 질의하다.

- 총학생회장이 그렇다고 답하자, 예산팀장이 위원들이 본인의 회의 자료에 성명을 기재하고, 다음번 회의 시 동일 자료를 재배포 하겠다고 말한다.

- 총학생회장이 학생경비 관련한 것이 겨울에 집행되어서 집행률이 낮다고 하는데 실제로 단대별 신입생 사업에 얼마나 쓰이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한다.

- 학생처장이 해외 및 국내봉사활동, 해외탐사 등 학생활동으로 지원하는 예산의 경우 주로 방학 때 많이 집행된다고 말한다. 신입생 환영행사를 비롯하여 수첩, 안내책자 발행, 재학생 만족도 조사 등 1,2월에 진행되는 사업이 많다고 말한다. 결산을 보면 알겠지만 거의 100% 집행되는 상황이라고 답하다.

- 총학생회장이 학생경비 내역을 물어보면 각 단대 행정실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답변을 했다고 말한다. 명확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다.

- 관리처장이 학생들이 추경예산시점까지 집행률이 8~90%가 되지 않으면 결산이 가까워 올수록 예산을 마감잡이로 집행할까봐 우려하는 것 같은데, 집행률이 적은 계정들은 학생들에게 어떠한 사업들이 남았는지 설명해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고 말한다. 결산 때는 모두 집행이 되겠지만 방학 때 집행이 예정되어 있어서 추경시점에 예산잔액이 많은 항목이 있다면, 예산팀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어떨지 제안하다.

- 학생처장은 학생지원경비 예산은 만약을 대비하여 조금은 여유 있게 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 예산팀장은 학생처에서 편성한 예산은 목적에 따라 대부분 소진되며, 학교 재정상 배정 예산을 넉넉히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한다. 예산팀에서 교비예산 편성 시 각 부서에서 편성한 예산에 대해 협의 및 조정 과정을 거침을 설명하다. 부서의 사업 계획에 따른 집행시기의 상이함을 말하고 차기 회의에서 학생경비의 집행률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고 답하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는 우리학교는 추경예산으로 가결산을 대체하기 때문에 결산 시점의 집행률을 알 수 없어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학생지원경비는 신입생 행사 때 많이 쓴다는데 공대에서는 돈이 많이 없어서 행정실에서 많은 지원을 못해준다고 했는데, 본부에서 대학비 배정 후 각 단대에서 집행하는 것이긴 하지만 신입생지원 오티예산이 잘 사용되는지 확인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묻다. - 예산팀장이 대학 실험실습비와 학생지원비 배정액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대학 자율 예산 편성임을 답하다. - 총무처장은 자율적으로 편성하기에 각 대학마다 다를 수 있음을 말한다. - 총학생회장이 예산팀에서 실험실습비와 학생지원비의 한도를 정해 주면 대학에서 알아서 집행하는 것인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맞다고 답하며 다만 증빙이나 규정에 맞게 집행하는지 예산팀에서 검토한다고 말한다. 우리학교는 예산을 엄격하게 보는 편이라고 덧붙이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대학원 장학금이 많이 감소된 원인을 질의하자 기획처장이 장학금 대상 학생이 없었다고 답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대상은 본교생 졸업예정자거나 직전학기 학점이 3.75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자 자체가 없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 학생처장이 성적우수자 대상자는 늘고 있으나 그 중 대학원 지원자가 줄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관리처장이 대학원 입학생이 줄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이다. - 예산팀장이 대학원 충원율을 전년보다 나아졌다고 정정하고 대학원 신입생 장학금이 줄은 이유는 장학금 수혜대상이 되는 신입생이 전년보다 적게 입학했음이라고 말한다.
--	---

	- 대학원 학생회장이 타교출신 대학원생을 위한 장학금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한다. 남은 장학금 예산을 다른 종류의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장학금의 대상자 선정 및 예산 편성은 중앙장학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 임의대로 변경이 어려움을 말한다. 2019학년도 예산(안)에서는 대학원 장학금 예산을 2018학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덧붙인다. - 학생처장이 타교 출신의 우수한 학생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말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다. 앞으로 기존 성적에 부합하는 학생 비율과 예산의 추이를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학금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한다. 올해 대학원 장학금이 추경에 준 것은 일시적으로 성적우수자 기준을 충족하는 본교 출신 입학생 비율이 준 것임을 말한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가 실험실습비가 추경에 감소한 이유와 연구협력관이 2월에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 예산이 내년으로 이월된 이유를 질의하다. - 관리처장이 연구협력관은 2월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인허가 및 엘텍공과대학 공간 협의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해 완공시기가 5월 이후로 늦춰졌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이월된 것이라고 말한다. - 예산팀장이 실험실습비 감소에 대해서는 당초 약대의 기관 실무실습비의 인상을 예상하였는데 인상이 되지 않아 추경에서 감소시켰으며, 국고사업으로 편성된 실험실습비가 기계기구, 시설관리비, 잡손실, 이월금 등으로 전용되어 당초 예산보다 줄어든 것이라고 말한다. - 총학생회장이 법인전입금 관련하여 법인 전입금 전액이 모두 사학연금 법인 부담금인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현재는 사학연금 법인부담금만 전입 되는 게 맞다고 말한다. - 기획처장이 법인이 보유한 재산으로 수익사업을 해서 발생한 수익 전액을 학교로 전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다. 현재 법인은 지속가능한 상태에서 최대한의 금액을 학교로 전출하고 있음을 말한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가 우리학교 적립금이 다른 학교 보다 많은데 적립금을 현행유지 하려는 이유를 질의하다.
--	---

- 기획처장이 적립금은 법인이 아닌 학교회계에 있음을 말하고 법인은 법인의 재산을 통해 발생한 사업수익 전액을 학교로 전출하고 있음을 덧붙인다.

- 총학생회장이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액 전출하고 있는 것인지 질의하고, 예산팀장이 그렇다고 답하다.

- 동아리연합회장이 법인전입금 전액이 사학연금 법정부담금만이면 법인의 수익사업의 수익성이 낮은 것이라고 말하고, 총무처장과 학생처장이 법인은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가 법인전입금이 국고수입보다 적다는 것은 말이 안 되며, 법인이 교육비용을 책임지는 것이 마땅한데, 이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명확히 공개해야한다고 말하다. 학교가 등심위 회의록을 법인에게 알리는 것만이 법인책무성 강화를 위해 충분히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하다.

- 관리처장이 많은 학교들이 법인에서 대부분의 적립금을 갖고 있고 학교에 그 수익을 나누어 주는 식으로 운영하는데, 우리학교는 학교가 적립금을 대부분 갖고 있다고 말하다. 법인이 학교에 비해 재산이 많지 않기에 수익도 많지 않은 상황임을 말하다. 충분하진 않지만 법인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은 100% 전출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책무성 강화를 더욱 요구하는 것이 어려움을 말하다.

- 학생처장이 학생위원이 적립금을 왜 안 쓰냐고 질의하였는데, 이미 쓰고 있으며 올해 추경예산에서는 학교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 원금보존기금에서도 인출하게 되었다고 말하다.

- 기획처장이 물가와 인건비는 매년 오르고 있는데 등록금을 10년 가까이 동결해왔기 때문에 적립금에서 인출해서 학교를 운영할 수 밖에 없었고, 그동안 임의기금에서 충당해 왔는데 그마저도 부족하여 올해는 원금보존기금에서 인출했음을 말하다.

- 총학생회장이 10년 동안 동결이라고 말했는데 동결되고 있을 때 건축기금과 기타기금에서 1,300억 원을 인출하여 장학기금으로 확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다. 법인에 돈이 없다고 해서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게 말이 안 되며, 등록금회계에 법정부담금이 있는 이유를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등록금 회계에 편성된 국고 대응 사업 등에서 집행된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임을 말하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가 원금보존기금이 인출되었다가 임의기금으로 적립했다가 다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데 그 용처를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건축기금, 연구기금, 장학기금 등 각 기금의 용처를 설명하고 원금보존기금 인출액 만큼 기금간 이관으로 편성되어있다고 말하다. - 외부위원이 교원급여 감소의 이유를 질의하다. - 위원장이 외부기관으로 간 휴직자가 예년보다 많았고, 의원퇴직 및 정년퇴직 등 예측하지 못한 휴직 및 퇴직이 늘어났다고 답하다. - 외부위원이 몇 명 정도 인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2018년 퇴임교원수가 약 20명 정도라고 알고 있다고 답하고, 위원장이 2018년도에 비정상 퇴임교원수가 많았기 때문에 교원급여가 감소하였으며 2019년도 상반기에는 잠시 충원 보류상태라고 덧붙이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가 차기자금이월금이 당초 예산에 비해 증가한 이유를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전년도에는 국고사업에서 이월금이 많이 발생하였고 올해의 경우에는 추경예산(안)에서 차기자금이월금이 다소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예금이자수입의 증가로 인해 내년에 환급될 선급법인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하다. - 총학생회장이 추경예산(안)에서 늘어난 차기자금이월금은 차년도에 어떠한 항목으로 편성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있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등록금회계 이월금은 편성지침에 따르며, 비등록금회계 이월금은 해당 사업에 편성하였음을 답하다. - 관리처장이 회계연도가 끊어짐에 따라 이월금은 발생할 수 밖에 없음을 말하고 전체 예산의 약 1.4% 가량인데 외부위원에게 회계상 적절한 수치인지 질의하다. - 외부위원은 많지 않다고 답하며 전년에 비해 줄은 수치라고 말하다. - 총학생회장이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을 2012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법인이 전액 부담 하였는지 질의하고 예산팀장이 그렇다고 답하다.
--	---

- 위원장이 추가 질문이 없음을 확인하고 추경예산(안) 의결을 제안하다. 위원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예산팀장, 외부전문가위원, 대학원 학생회장 총 8명이 찬성하고, 동아리연합회장 1명이 반대하고, 총학생회장, 총부학생회장,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 총 3인이 기권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2018학년도 교비 추경예산(안)을 의결하다.

• 의결사항

- 2018학년도 교비회계 추경예산(안)

2) 2018학년도 부속병원 추경예산(안) 심의 및 의결

- 위원장이 부속병원 추경예산(안) 심의를 제안하여 부속병원의 기획조정실장과 기획예산과장이 배석하고 기획예산과장이 양병원을 분리하여 설명하겠다고 말하다.

- 위원장이 설명은 분리해서 하지만 의결은 한 번에 하자고 제안하다.

- 기획예산과장이 목동병원의 추경예산III(안)을 설명하다. 수입부는 병상수 감소 및 장례식장 이용률 감소를 반영하여 의료수익과 의료외수익은 축소 편성하였으며 건설차입금과 법인기본금 증가를 반영하여 수입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하다. 지출부는 1회용 의료소모품 사용증가로 인한 재료비 상승, 서울병원 차입금이자, 공사비 등으로 목동병원 추경예산II 보다 확대 편성하였다고 말하다.

- 기획예산과장이 서울병원 추경예산(안)을 설명하다. 의료수익은 병상수 330개를 환산 적용하여 편성하였다고 말하다. 지출의 경우 1개월 치 급여를 편성하였고 재료비, e-IRB사용료, 임대보증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다고 설명하다.

- 관리처장이 회계분리하면 기존에 목동병원 회계에 잡아 놓은 차입금이나 자산들을 서울병원 회계로 이관시키는 게 가능한지 질의하다.

- 기획예산과장이 회계감사 때 감사인들과 상의한 결과 추경예산(안)까지 목동병원에서 잡고 결산 때부터는 분리할 것임을 말하다.

- 외부위원이 목동병원과 서울병원의 차입금이나 자산의 이관 문제는 두 법인이 분리된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 회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회계차원의 문제이므로 어떻게 두 병원의 회계를 내부적으로 관리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하다.

- 관리처장이 결산시점에 바뀐다면 추경을 거치지 않고 큰 액수의 예산이 옮겨져도 되는 것인지 질의하다.

	- 외부위원이 법인이 다르다면 추경을 거쳐야 하지만, 사업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답하다. 이어 교직원 급여 인상분이 총 인건비 예산 대비 인상분인지 1인당 인상분인지 질의하다. - 기획예산과장이 1인당 인건비를 환산했을 때 개인의 기존 인건비 대비 인상률이라고 답하다. - 학생처장이 본교는 교원 임금인상이 없었음을 말하며 임금인상이 호봉 자연승급을 지칭하는 것인지 확인하다. - 기획예산과장이 자연호봉인상분과 임금인상을 합한 것이라고 말한다.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임금인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이 어려웠다고 말한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가 기존에 요청했던 병원재정악화에 대한 운영계획 답변이 이상적이었다고 지적하며, 실제 의료수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부채비율도 높은 악화된 재정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요청하며 재무상태보면 이익잉여금도 적자였다는 것을 언급하다. - 기획조정실장이 작년 계획에 비해 매출이 감소한 건 사실이고, 새 병원 오픈도 축소를 했기 때문에 더 줄어들었다고 답하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강등되었고, 수치상 약 5%의 매출이 감소하였다고 말한다. 의료수익이 올해 예상만큼 증가하진 못했지만 최근 3개월은 예년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고 답하다. - 기획예산과장이 2018학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NICU사태 전이었고, 2018학년도 추경예산II 편성시에는 서울병원 오픈계획이 구체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 수익이 변동되었음을 말한다. 서울병원이 오픈하면서 의사들이 목동병원에서 가게 되어 병상수가 축소되었고 이로 인해 의료수익 상당분이 감소하였다고 말한다. 최근 3개월 동안은 예년 수준의 수익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추세가 지속되면 사태 이전으로 수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다. 서울병원이 어떻게 운영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병원에서는 수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학부 학생위원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한 답변은 병원의 비전과 전략을 말한 것이라고 하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가 법인 차입금지원이 작년에 이미 큰 규모로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법인 지원으로 재정난을 타개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구체적이고 적절한 방안인지 모르겠다고 하다. - 기획조정실장이 병원이라는 곳이 유동성 위기가 있다고 해서 은행
--	---

에 돈을 빌리거나 하는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다. 그 부분에 대해 법인과 긴밀하게 상의하고 있다고 말한다.

- 관리처장이 건축공사비가 증액된 것이 설계변경이 반영된 것인지와 추경예산(안)의 리스부채가 적은 것 같은데 내년 본예산(안)에 포함이 되어있는지 질의하다.

- 기획예산과장이 건축공사비는 설계변경이 일어나서 증가하게 되었고 추경예산(안)으로 건축공사비는 거의 다 반영된 것이라고 하다. 또한 리스부채 관련해서는 2019학년도 본예산(안)에 반영하는 게 더 적합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 고정자산 및 유동부채는 2019학년도 본예산(안)에 반영하였다고 하다.

- 외부위원은 본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기 보다는 추경예산(안)에 반영을 안 하겠다는 것도 병원 예산 관리의 문제라고 말한다. 즉, 고정자산과 유동부채를 2018학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기 보다는 2019학년도 본예산(안)에서 반영하겠다는 의사로 이해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각 병원의 재무정보를 왜곡시킬 수 있음을 우려하다. 예를 들어 서울병원의 은행 차입금 이자가 추경예산(안)에는 목동병원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 데 이 경우 서울과 목동병원 각각의 재무 정보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 기획예산과장이 내년부터는 서울병원에 반영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결산 때부터 반영할 것임을 말한다.

- 외부위원이 2019학년도 본예산(안)에서는 목동병원과 서울병원을 합친 예산(안) 자료도 제공해 주기를 요청하다.

- 기획예산과장이 알겠다고 답하고 기획조정실장과 같이 퇴장하다.

- 위원장이 추가 질문이 없음을 확인하고 의결을 제안하다.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 총 4인이 반대하고, 대학원 학생회장 1인이 기권하고, 위원장, 기획처장, 예산팀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외부전문가위원 총 7인이 찬성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2018학년도 병원 추경예산(안)을 의결하다.

• 의결사항

- 2018학년도 병원 추경예산(안)

3. 다음회의 일정 및 내용

- 위원장이 공식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 마쳤음을 선언하며 2차 위원회를 1월 14일(월) 오후 2시 20분에 개최하기로 하고 2019학년도 학교회계 예산(안) 심의 및 의결과 등록금채정을 안건으로 다루기로 하다.

	- 총학생회장이 작년에는 1월에 최소 3~4회 회의를 통해 안건들을 다뤘다고 말하다. - 관리처장이 추가일정을 잡는 것이 14일에 예정된 2차 회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추가 일정을 정하는 것을 제안하다. - 총학생회장이 실무위원회 관련 말고도 예산(안)심의와 등록금 책정을 위해서도 최소 2번의 회의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하다. - 관리처장이 2019학년도 예산(안)과 등록금 책정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분리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하다. 회의시간이 다소 길어지더라도 한 번에 이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제안하다. - 총학생회장이 2차 회의 중간에 총학생회 행사에 잠시 참석해야함을 알리고 정회를 요청할 것이라고 하다. - 위원장이 알겠다고 하고 논의된 사안을 다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자고 하다. - 총학생회장이 2차 회의에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등록금과 예산(안)을 졸속처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실무위원회에 대해서는 이후 추가회의 잡아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하다. - 위원장이 회의 자료를 2시간 전에 열람할 수 있음을 알리다. ■ 폐회 - 위원장은 2차 위원회를 1월 14일(월) 오후 2시 20분에 개최하기로 확인한 후 폐회를 선언하다.
확 인	위의 기록이 사실임을 확인함 2019년 1월 7일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이공주복	이공주복	위 원	이상은	이상은
	위 원	강미리	강미리	위 원	이준엽	이준엽
	위 원	김다연	김다연	위 원	이지호	불 참
	위 원	김상택	김상택	위 원	최성희	최성희
	위 원	김선우	김선우	위 원	최혜련	최혜련
	위 원	도재형	도재형	위 원	한은서	한은서
	위 원	이민하	이민하			
작 성 자	예산팀 안 예 지 (안예지)					